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0. . .<br>(제 회)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br>(국토교통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0. 7.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여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토록하고,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30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 법률 제17448호, 2020. 6. 9. 공포, 2020. 9. 10. 시행)됨에 따라,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시설(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 1) 광역버스운송사업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규정

나.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절차 등(안 제9조의4 신설)

- 1)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인 곳으로서 완료된 광역교

통개선대책 사업수를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로 나눈 비율 또는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을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철도 건설사업이 준공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기간은 최대 3년 범위에서 정하되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위치 및 지정사유 등을 공고하고 14일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함

4)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구 명칭이 변경되거나 개발계획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된 경우를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 함

다.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안 제9조의5 신설)

1) 지정 기준에서 정한 비율이 100분의 90이상 달성 되거나 철도 건설사업이 준공된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지정 해제 요청 시 광역교통 현황 등 서류를 제출토록 함

라.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 및 변경(안 제9조의6 신설)

1)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 시 연차별 운영 및 관리계획, 기대효과를 제출토록 함

2)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조달방법이 변경되거나 재원규모가 100분

의 30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 함  
마. 부담금의 사용 용도(제17조의5 신설)

- 1) 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지원,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환승정류소 및 회차시설 등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  
설의 건설 또는 개량 지원 등을 추가 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2. 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제9조의4부터 제9조의6까지 및 제1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 중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인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지구의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를 전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수로 나눈 비율(이하 “이행률”이라 한다) 또는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을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으로  
나눈 비율(이하 “집행률”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 건설사업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준공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3. 그 밖에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사업지구의 광역교통을 개선하  
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간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정  
하며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해당 특  
별대책지구의 지정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특별  
대책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  
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구의 위치 및 지정사유 등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의 열람기간이 끝난 후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  
견서 및 그 의견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위치
2.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
3. 특별대책지구의 현황(인구, 주택수 등)
4.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
5. 법 제7조의8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

의 개요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특별대책지구 지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⑧ 법 제7조의6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구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6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 및 위치
2.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일 및 지정기간
3.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및 변경 사유

####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제9조의5(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대책지구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경우로서 집행률과 이행률이 100분의 90 이상 달성된 경우
2.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철도 건설사업이 준공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불편이 현저히 감소되는 등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현황
2.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상황
3. 특별대책의 내용 및 운영 결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6(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 및 변경) ① 법 제7조의8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별대책의 연차별 운영 및 관리계획
2. 특별대책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

② 법 제7조의8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특별대책의 재원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특별대책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특별대책의 확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별대책의 사전검토, 관리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5(부담금의 사용 용도) 법 제11조의6제3항제4호에 따른 부담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을 지원하는 경우
2. 운행정보 시스템, 좌석 사전 예약 시스템,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지원하는 경우

가. 환승 정류소 및 회차시설

나. 운전자 휴게소

다. 친환경 차량을 위한 충전소 또는 충전설비

라. 그 밖에 이용객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 제9조의5, 제9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4조의2( <u>광역교통시설</u> ) ① · ②<br>(생 략)<br><u>&lt;신 설&gt;</u> | 제4조의2( <u>광역교통시설 등</u> ) ① ·<br>② (현행과 같음)<br>③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br>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br>하는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br/>법</u> 」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br>노선 <u>여객자동차운송사업</u> ”이란<br>다음 각 호와 같다.<br>1. <u>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br/>내버스운송사업</u><br>2. <u>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br/>내버스운송사업</u> |
| <u>&lt;신 설&gt;</u>                                          | 제9조의4( <u>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br/>의 지정 기준·절차 등</u> ) ① 국<br>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br>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br>는 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br>다) 중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1<br>년 이내에 입주 예정인 곳으로<br>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br>해당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였<br>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br>경우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른<br><u>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u>  |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지구의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를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로 나눈 비율(이하 “이행률”이라 한다) 또는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을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으로 나눈 비율(이하 “집행률”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 건설사업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준공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3. 그 밖에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사업지구의 광역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간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정하며 지정 기간 만료 시점에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해당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구의 위치 및 지정사유 등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의 열람기간이 끝난 후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위치

2.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

3. 특별대책지구의 현황(인구, 주택수 등)

4.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

5. 법 제7조의8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의 개요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특별대책지구 지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⑧ 법 제7조의6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구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신 설>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  
의6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  
정 또는 변경 지정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 및 위  
치

2.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일 및  
지정기간

3.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및 변  
경 사유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제9조의5(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  
제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  
별대책지구 지정 기간이 만료되  
기 전에 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경우  
로서 집행률과 이행률이 100  
분의 90 이상 달성된 경우

2.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경우

<신 설>

로서 당해 철도 건설사업이  
준공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특별대책지  
구의 광역교통 불편이 현저히  
감소되는 등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현  
황

2.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  
선대책 이행상황

3. 특별대책의 내용 및 운영 결  
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의 지정을 해  
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6(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  
립 및 변경) ① 법 제7조의8제1  
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별대책의 연차별 운영 및 관리계획

2. 특별대책 이행에 따른 기대 효과

② 법 제7조의8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특별대책의 재원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특별대책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특별대책의 확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대규

<신 설>

모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별대책의 사전검  
토, 관리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다.

제17조의5(부담금의 사용 용도)

법 제11조의6제3항제4호에 따  
른 부담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 노  
선의 운행을 지원하는 경우

2. 운행정보 시스템, 좌석 사전  
예약 시스템, 2층 전기버스 도  
입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  
원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지원  
하는 경우

가. 환승 정류소 및 회차시설

나. 운전자 휴게소

다. 친환경 차량을 위한 충전소  
또는 충전설비

라. 그 밖에 이용객의 안전 및

〈 의안 소관 부서명 〉

|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과 |                  |
|---------------|------------------|
| 연 락 처         | (044) 201 - 5056 |